

|           |                   |      |
|-----------|-------------------|------|
| 의안번호      | 제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4. . .<br>(제회) |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강정애<br>(국가보훈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8호, 2024. 2.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위원 5명 이상 동의할 경우에만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던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에 따라 소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전단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 위원회는 보상·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검토·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br>「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br>1. ~ 7. (생략)<br>8. <u>국가보훈부장관</u><br>9. ~ 14. (생략)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br>-----<br>-----<br>-----<br>-----<br>-----.<br>1. ~ 7.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br>9. ~ 14. (현행과 같음)          |
|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u>위원장</u> 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u>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                                                   | 제4조(안건의 제출) ----- <u>위원장, 부위원장 및 -----</u><br>----- <u>&lt;후단 삭제&gt;</u>                                                                  |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u>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u><br><br>② · ③ (생략)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u>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보상·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로 한다.</u><br><br>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검토·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 |                  |
| 연 락 처         | (044) 202 - 5048 |